

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규정 및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업무처리기준 제·개정 사전예고

1. 규정 명칭

-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규정 및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업무처리기준

2. 제·개정 이유

- 가. 구상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요건 완화
- 나. 타 법률에 의한 미상각채권 원금감면 근거 신설 등

3. 주요 제·개정 내용

- 가. (규정) 채권보전조치 유보 및 해제요건 완화
- 나. (규정) 채무조정 대상 확대 및 타 법률에 의한 미상각채권 원금감면 근거 신설
- 다. (규정) 채무조정 잠정조치 시행 근거 별도 절 및 조문으로 신설
- 라. (기준) 사업자보증 담보물 처분 전 보증채무이행 사유 추가
- 마. (기준) 임금채권 채권보전조치 해제 업무처리방법 명확화 등
- 바. (기준) 기타 관계법령 및 타부서 내규 개정사항 반영, 표현정비 등

4. 의견제출

이 제·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 까지(도착기준)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- 나. 제출자의 성명(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

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<보내실 곳>

- 주소 :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)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
- 담당자(이메일) : 이수현 차장(leesu@hf.go.kr)
- 전화번호 : 051-663-8186
- 팩스번호 : 0505-036-0185

붙임 1.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규정 개정안 전·후대비표
2.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전·
후대비표